

기 안	과 장	무역조사실장
김수현 (21.7.5) 76수현	박형민 박형민	직무대리 代 박형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고

□ 추진배경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식 서명에 따라, 동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필요

추진경과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협상개시	'12.11월	'16.5월	'20.7월
공식협상	'13.5월~'20.7월(31차)	'16.6월~'18.3월(6차)	'20.7월~11월(4차)
협정타결	'19.11월	'19.8월	'21.2월
정식서명	'20.11월	'21.5월	'21.11월(예정)
비준동의	'21.9~10월(잠정)	'21.9~10월(잠정)	-
협정발효	'22.1월(잠정)	'22.1월(잠정)	-

*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안 법제처 심사중('21.7.2 기준)

□ 주요내용

- ① **FTA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RCEP* 회원국, 이스라엘 포함**(영 제24조1항)

* WTO협정문은 다자(글로벌)세이프가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FTA체결에 의한 세이프가드는 당사국간 합의수준에 따라 불공법 시행령에 추가하여 규정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 10개국+한국,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② 동일상품에 대해 1회를 초과하여 세이프가드조치 재발동 금지 대상 국가에 **이스라엘 포함**(영 제24조5항5호)

- ③ 잠정FTA세이프가드 신청내용에 대한 입수방법 관보게재 및 최소 20일 이상 의견수렴기간 보장 대상국가에 **이스라엘 포함**(영 제24조12항)

- ④ FTA세이프가드 예상존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점차적인 조치완화 대상국가에 **RCEP 회원국, 이스라엘 포함**(영 제24조16항)

- ⑤ **다자세이프가드 재량적 적용배제*** 대상국가에 **이스라엘 포함**(영 제24조의2)

* FTA체결국産 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부 대상국가에 대해 다자(글로벌)세이프가드 적용배제 가능

□ 향후계획

- ('21. 7월) 관계부처협의(10일 이상) 및 각종 영향평가*(20일 소요)
- ('21. 7~8월) 입법예고(40일 소요, 부처협의와 동시 진행 가능)
- ('21. 8~9월) 법제처 심사(약 30일 소요)
- ('21. 10~11월)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및 개정 공포(약 14일 소요)

* 기존 법령에 문구만 추가 삽입하는 단순 개정으로 절차 시작부터 완료까지 약 4개월 소요

□ 【참고】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 (개념) 특정상품의 수입 증가로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 조정, 수입물품 수량 제한 등의 조치 실시
- (종류) WTO세이프가드, FTA세이프가드

WTO세이프가드 (다자세이프가드)	• GATT 제19조 및 WTO세이프가드협정에 따른 다자세이프가드조치 • 대상국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WTO 회원국 대상 발동 • 수입수량 제한, 관세 인상 등이 가능하며, 조치 수준에 제한 없음
자유무역협정(FTA) 세이프가드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양자세이프가드조치 • FTA체결 당사국간 발동 • 관세인하 정지, 관세 인상 등이 가능하며, 조치수준에 제한 있음

- (무역위 역할) 수입증가 및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유무를 조사·판정하고, 세이프가드조치 시행을 관계부처(기재부)에 건의
- * FTA세이프가드조치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관련규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명시

붙임 : 1.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19호,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RCEP 회원국

20. 이스라엘

제24조제5항제5호 중 “미합중국·터키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호주·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을 “미합중국·터키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호주·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으로 한다.

제24조제12항 중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4조에 따라 미합중국·캐나다·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콜롬비아공화국, 중미 공화국들 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4조, 또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에 따라 미합중국·캐나다·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콜롬비아공화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공화국 또는 이스라엘”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에 제12호,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RCEP 회원국

13. 이스라엘

제24조의2제1항 중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을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이스라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각각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 ----- ----- ----- ----- ----- -----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u><신설></u>	<u>19. RCEP 회원국</u>
	<u>20. 이스라엘</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 ----- ----- ----- ----- -----.
1. ~ 4. (생략)	1. ~ 4. (생략)

5. 미합중국·터키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호주·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⑥ ~ ⑪ (생략)

⑫ 무역위원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조,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4조에 따라 미합중국·캐나다·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콜롬비아공

5. 미합중국·터키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호주·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스라엘-----

⑥ ~ ⑪ (현행과 같음)

⑫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4조 또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7.3조에

화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 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는 방법과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⑬ ~ ⑮ (생략)

⑯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1. ~ 11. (생략)

<신설>

제24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미합중국·캐나다·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콜롬비아공화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공화국 또는 이스라엘-----

⑬ ~ ⑮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RCEP 회원국

13. 이스라엘

제24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 ① -----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는 미합중국·인도 공화국·페루공화국 및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이하 이 조에서 “세이프가드조치적용배제대상국가”라 한다)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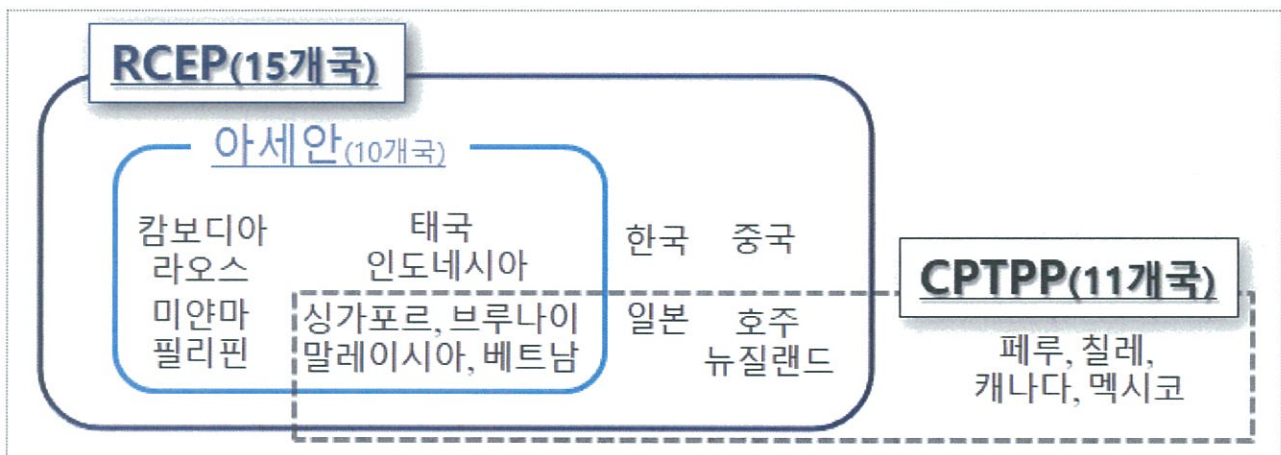
----- 콜롬비아공화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인도네시아공화국·이스라엘-----

-----.

② ~ ③ (현행과 같음)

-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제안한 EAFTA(ASEAN+3) 및 일본이 제안한 CEPEA(ASEAN+6) 논의 진행
 - * EAFTA(East Asia Free Trade Area): ASEAN, 한국, 중국, 일본
 - *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ASEAN, 한, 중, 일, 호, 뉴, 인
- 2011.11월 ASEAN 정상회담시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중,일, 호,뉴,인)으로 구성된 RCEP의 2012.11월 개시 선언을 목표로 설정
- 2012.11.2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정 협상개시 선언
- 2013.5월 협상개시 후 '20.11월까지 31차례 공식협상 및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개최
 - '17년 11월 제1차 장관회의에서는 '18년 RCEP 실질타결을 목표로 설정
 - '18년 11월 제2차 장관회의에서는 RCEP이 최종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고, '19년 타결을 결의
 - '19.11.4 제3차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20년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
- 2020.11.15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15개국간 RCEP 협정 최종 서명

< RCEP(15개국)과 CPTPP(11개국) 가입국 비교 >



붙임4

한-이스라엘 FTA 추진 경과

- ☐ ('09.5월) 제4차 한-이스라엘 경제공동위에서 FTA 타당성 검토연구 진행에 합의하고, '09.10~10.8월 민간공동연구 실시
- ☐ ('15.9월) 한-이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회의」 개최 및 경제적 타당성 추가 분석결과 및 향후일정 논의
- ☐ ('15.11월) 「한-이스라엘 FTA 추진계획(안)」에 대한 부처 의견수렴
- ☐ ('16.1월) 한-이스라엘 F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실시
- ☐ ('16.5월) 한-이스라엘 FTA 추진계획 국회(산업통상자원위) 보고 및 통상차관간 한-이스라엘 FTA 협상개시(예루살렘) 선언
- ☐ ('16.6월) 한-이스라엘 FTA 1차 협상(서울, 6.27~30)
- ☐ ('16.12월) 한-이스라엘 FTA 2차 협상(예루살렘, 12.11~15)
- ☐ ('17.2월) 한-이스라엘 FTA 회기간 협상(예루살렘, 2.19~23)
- ☐ ('17.3월) 한-이스라엘 FTA 3차 협상(서울, 3.20~24)
- ☐ ('17.4월) 한-이스라엘 FTA 4차 협상(예루살렘, 4.19~30)
- ☐ ('17.5월) 한-이스라엘 FTA 5차 협상(서울, 5.22~26)
- ☐ ('18.3월) 한-이스라엘 FTA 6차 협상(예루살렘, 3.13~15)
- ☐ ('19.8월) 한-이스라엘 FTA 타결 선언(예루살렘, 8.21)
- ☐ ('20.2월) 한-이스라엘 FTA 가서명(2.12)
- ☐ ('20.7월) 한-이스라엘 FTA 경제적 영향평가 완료
- ☐ ('21.5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붙임5
무역구제분야 FTA 협정별 비교

구분		한-미국 (‘12.3. 발효)	한-터키 (‘13.5. 발효)	한-호주 (‘14.12 발효)	한-캐나다 (‘15.1. 발효)
반덤핑/ 상계 관세		①조사개시 전 통보 및 협의 ②가격인상약속/ 사전물량합의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제로잉금지 ③최소부과원칙 ④재심시 미소마진 적용 ⑤누적평가시 주의의무 ⑥재심종료후 반덤핑 조사요건강화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제로잉금지 ③최소부과원칙 ④가격약속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최소부과원칙 ③가격약속
다자 세이프가드		재량적 적용배제	조사개시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 제공	재량적 적용배제	재량적 적용배제
양자 세이프 가드	대상	상 품	상 품	상품	상품
	적용 요건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조치 수단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조치 기간	2+1	2+1	2+1	2+2
	조사 기간	1년	1년	1년	1년
	재발동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
	보상 /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발동시보상협의 * 30일 이내 미합의시 24개월간 보복면제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발동시보상협의 * 30일 이내 미합의시 24개월간 보복면제
	잠정 조치	200일 이내 * 조사개시 45일 후	200일 이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존속 기간	협정발효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동안	협정발효후 10년	관세철폐 종료 후 5년 관세철폐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동안	관세철폐 종료 후 10년 협정 발효 후 15년
특별 SG		농산물, 자동차, 섬유 및 의류	농산물	농산물	-

구분		한-중 (‘15.12. 발효)	한-뉴질랜드 (‘15.12. 발효)	한-베트남 (‘15.12. 발효)	한-콜롬비아 (‘16.7. 발효)
반덤핑/ 상계 관세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가격약속 ③현지실사 전 통보 ④재심종료 후 반덤핑조사요건 강화 ⑤누적평가시 주의의무 ⑥신규수출자 재심시 미소마진 적용 ⑦이해관계자 신청시 공청회 개최고려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제로잉금지 ③가격약속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제로잉금지 ③최소부과원칙 ④가격약속 ⑤누적평가시 주의의무 ⑥재심종료후 반덤핑조사요건강화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제로잉금지 ③최소부과원칙 ④가격약속
다자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 제공, 양자 및 다자 세이프가드 동시적용 배제	재량적 적용배제, 양자 및 다자 세이프가드 동시적용 배제	조사개시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 제공 재량적 적용배제	①재량적 적용배제 ②세이프가드 동시 적용 배제
양자 세이프 가드	대상	상품	상품	상품	상품
	적용 요건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조치 수단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조치 기간	2+2	2+1	2+1	2+1
	조사 기간	1년	1년	1년	1년
	재발동	조치 상응기간 미경과시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보상 /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잠정 조치	200일 이내	200일 이내	200일 이내 * 조사개시 45일 후	200일 이내 * 조사개시 45일 후
	존속 기간	협정발효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동안	협정발효후 5년, 관세철폐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동안	협정발효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관세철폐기간동안 타방동의시 존속가능	협정발효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 동안
특별 SG					

구분		한-영 (‘21.1. 발효)	한-인니 (‘21.9. 발효예정)	RCEP (‘22.1. 발효예정)	한-이스라엘 (‘22.1. 발효예정)
반덤핑/ 상계 관세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공공의 이익고려 ③재심종료후 반덤핑조사요건강화 ④누적평가시 주의의무 ⑤재심에 적용 가능한 미소기준 ⑥최소부과원칙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제로잉금지 ③최소부과원칙 ④누적평가시 주의의무 ⑤재심종료후 반덤핑조사요건강화 ⑥반우회덤핑 협력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제로잉금지 ③필수사실의 공개 ③가격약속(부속서)	①조사개시 전 통보 ②가격약속 ③최소부과원칙 ④공공의 이익고려 ⑤제로잉금지 ⑥이해관계자 신청시 공청회 개최고려
다자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 제공, 양자 및 다자 세이프가드 동시적용 배제	조사개시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 제공 재량적 적용배제 양자 및 다자 세이프가드 동시적용 배제	조사개시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 제공, 양자 및 다자 세이프가드 동시적용 배제	조사개시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 제공 재량적 적용배제 양자 및 다자 세이프가드 동시적용 배제
양자 세이프 가드	대상	상품	상품	상품	상품
	적용 요건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조치 수단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조치 기간	2+2	2+1	3+1	2+1
	조사 기간	1년	6개월	1년	1년
	재발동	-	조치 상응기간 미경과시 재발동 금지	조치 상응기간 미경과시 재발동 금지	재발동 금지
	보상 / 보복	발동시보상협의 * 30일 이내 미합의시 24개월간 보복면제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발동시보상협의 * 30일 이내 미합의시 36개월간 보복면제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잠정 조치	200일 이내	180일 이내 * 조사개시 45일 후	200일 이내	200일 이내 * 조사개시 45일 후
	존속 기간	관세철폐 종료후 10년까지	협정발효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동안	관세인하 또는 철폐 종료후 8년까지	관세인하 또는 철폐 종료후 5년까지
특별 SG		농산물			

붙임6

FTA타결 후 발효를 위한 절차 개괄

